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787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최민희·김원이·노종면

정동영 • 조인철 • 김우영

이정헌 • 박수현 • 박지원

한민수 · 박해철 · 황정아

박민규・김 현・이훈기

박용갑 • 백승아 • 황명선

문금주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9명 이사 모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한국방송공사 운영과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 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 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 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 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11人으로"를 "13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理事는"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명
-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여야 하고, 공사는 제4 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 3. 추천 이유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안건상 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 ⑩ 이사회는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임명 제청할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 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경우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이 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추천"을 "임명제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
| 등) ① (생 략) |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 ② |
| 이사 <u>11人으로</u> 구성한다. | <u>13명으로</u> |
|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
| 고려하여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 <u>지역성 및 사회</u> |
|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 <u>다음 각 호에</u> |
| |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
| | 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 |
| | 령이 임명한다. |
| <u><신 설></u> |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 |
| | 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
| | 추천하는 사람 5명 |
| <u> <신 설></u>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 |
| | 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
| | <u>사람 5명</u> |
| <u> <신 설></u> |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 |
| | 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
| |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 |
| | 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 |
| | <u>명</u> |
| <u><신 설></u>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
| | 체는 이사 추천시 다음 각 호 |

④ ~ ⑥ (생 략)

⑦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단서</td>신설>

<신 설>

<신 설>

에 따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여야하고, 공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추천 이유
-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 8 -----

-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안건상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 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 표자를 추천한다.
- ① 이사회는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임 명 제청할 사장 후보자를 추천

8·9 (생 략)

-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 |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 1. ~ 7. (생략) <신 설>
 - 8. ~ 15. (생략) ② (생략) <신 설>

<u>받을</u>수 있다.

① (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
- 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 8. ~ 1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50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 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 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경 우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 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 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 보해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구 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 련해야 한다.

-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 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 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 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차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사회가 정한다.